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고양시의회의회장 이 길 용



2021년 12월 24일

고양시의회 훈령 제42호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제도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인사행정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의회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③ 인사위원회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팀장이,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4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 규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연간 인사운영계획 등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제5조(기밀유지) 인사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의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승진

제6조(기본원칙) 상위직 결원 시 보충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양시 등 다른 기관과의 인사교류 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관리) 승진후보자명부는 의장이 통합작성 관리한다.

제8조(승진임용 방법)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서열에 따른 법정배수 이내의 사람 중에서 임용하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업무수행능력, 성실성, 전문성, 창의성, 헌신성, 자발성, 징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임용해야 한다.

제9조(근무성적평정) ① 근무성적은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5조부터 제11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객관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도록 평정해야 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대상 공무원별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 같다.

제4장 전보

제10조(전보의 원칙) 공무원의 전보는 법령상의 전보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을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특수분야 근무자관리) ①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사람 중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장기 근무(승진 후 포함)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수분야 범위는 전산, 도시계획, 환경, 중장기계획 관련 계속사업업무 등 장기근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12조(결원보충) ① 결원이 생기면 파견 등으로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② 다른 기관 공무원 전입은 자체승진 대상자 및 신규임용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 한정한다.

제5장 임용기준

제13조(임용기준 및 인사청탁 배격) ①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관계 법령에 규정된 임용요건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본인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청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탁사항을 내부통신망에 공개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인사시기·예고 등) ① 공직의 전문성 제고와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임용(승진, 전보, 전출입 등)은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며, 정기인사를 실시하여 인사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정기인사는 연간 인사운영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직제의 신설·통합·폐지 등 인사운영상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정기인사의 시기, 인사기준 등을 사전에 예고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매년 말에 다음 연도의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다음 이를 내부통신망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5조(신규임용후보자의 교육) 신규임용후보자에게는 사전에 도 단위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고양시 교육에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보직관리

제16조(순환보직 및 희망보직제) ①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개인의 능력 및 적성과 각 직위 특성상 필요로 하는 직무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순환보직 함으로써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정기인사 전에 공무원의 희망보직을 조사하거나 부서장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조사 및 추천결과를 내부통신망에 공표하고 보직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보직관리기준) ① 6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직위는 담당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별표 2의 단계별 보직경로에 따라 부여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기술직렬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원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수 직렬 중 업무 특성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에 따른 중징계

2.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에 따른 경징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품 및 향응 수수

나. 공금의 횡령·유용

다. 음주운전, 성범죄·성희롱

라. 그 밖에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비위 등

④ 6급 공무원 중 제3항제2호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법 제71조에 따른 징계처분기간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에 해당 하는 기간 동안 팀장보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시정 및 의정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6급 공무원 중 무보직인 사람을 팀장직위에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6급 무보직 보직부여 순위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임용 예정된 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임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부의 순위에 상관없이 보직을 부여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1. 의정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8조(전문직위 지정 등)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지방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등

제19조(평가지기) ① 근무실적평가는 정기평가, 최종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 최종평가는 임용약정을 연장하는 경우 임용약정의 연장 전 실시하며, 정기평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임용약정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약정의 종료 전 실시한다.

④ 수시평가는 임용약정내용을 변경하는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임용약정기간(약정기간 연장 시 연장 전 채용기간 포함)이 1년 미만인 임기제공무

원의 경우에는 정기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근무실적 평가방법) ① 근무실적평가는 임기제공무원 본인이 자기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전문위원을 포함한다.)이 1차 평가를 실시하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통하여 평가한다.

② 근무실적평가서는 별지 서식을 사용한다.

제8장 보칙

제21조(고양시와의 인사교류 활성화) ① 의장은 의회와 고양시 사이 인사교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인사교류 시기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 시기는 고양시 정기인사 일정에 맞추어 하되, 긴급한 인사수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교류 시기를 정할 수 있다.

③ 의회는 교류대상 공무원의 임용 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의회와 고양시는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의회와 고양시 사이 인사교류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평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가산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에 따라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근무성적 평정 및 확인자(제9조 관련)

평 정 대 상		평 정 자	확 인 자
계 급	소 속		
5급 (직무대행 포함)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미지정
6급 이하	의회사무국	담당관, 전문위원	사무국장

[별표 2]

보직경로(제17조 관련)

직 급 별	단 계 별		비 고
	1단계 보직	2단계 보직	
5급 (직무대행 포함)	의회전문위원	의정담당관	
6급	의회전문위원, 팀장		
7급 이하 (6급 부팀장 포함)	의회사무국		

성 과 목 표 평 가 서

1. 평가대상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채용구분	성 명	채용기간	담 당 업 무	평 가 기 간

2. 업무성과목표

-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임기제공무원이 평가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성과 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 단위목표 및 목표달성도 평가

①단위목표	②성과측정 기준	③추진일정	④업무비중(%)	목 표 달 성 도 평 가			
				⑤본인평가 (%)	⑥직근 업무감독자 평가(%)	⑦근무실적평정위원회 평가(%)	⑧실 적 가 감 점
A)							
B)							
C)							
D)							
						⑨최종 평정점(⑦+⑧)	

- ① 단위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
- ② 성과측정기준 : 단위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능한 계량화함
- ③ 추진일정 : 단위목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 ④ 업무비중 : 단위목표가 전체 담당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하되, 각 단위목표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함
- ⑤ 본인평가 : 임기제공무원이 단위목표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함
- ⑥ 직근 업무감독자 평가 : 직근 업무감독자가 단위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함
- ⑦ 근무실적평정위원회 평가 : 본인 평가 및 직근 업무감독자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평가함
- ⑧ 실적 가감점 : 채용기관의 장이 수시점검 결과 실적 가감점을 단위목표별로 기재함
- ⑨ 최종 평정점 : 단위목표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평정점의 합계 + 실적가감점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임면·휴직·면직과 징계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규정 제정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제2조).
- 나.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및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라. 전보원칙 및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마. 임용기준 및 인사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바. 보직관리 및 지방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 사. 고양시의회와 고양시 사이 인사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1조)